

## 씨티자유적립식정기예금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씨티자유적립식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 거래에는 "예금거래기본약관"과 "적립식예금약관" 및 이 예금특약을 적용한다.

### 제2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적금으로 한다.

### 제3조 가입대상

제한없음 (단,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.)

### 제4조 예금의 입금

이 예금의 입금액은 매회 10만원 이상이며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. 다만, 만기일 직전 1개월간은 입금할 수 없다.

### 제5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이상 3년이하 월단위로 한다.

### 제6조 지급시기

이 예금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한다.

### 제7조 분할인출

이 예금은 입금일을 지정하여 입금 건별로 분할인출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회차의

입금건은 여러번 나누어 인출할 수 없으며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.

## 제8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입금 건별로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③ 만기일 후에 지급청구 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- ④ 중도해지이율을 하기를 따른다.

➤ [2012년 2월27일 이전 상품 가입 고객]

신규일 이후 5년 경과전

- 1개월 미만 : 연 (%)
- 1개월 이상 : 연 (%)
- 1년 이상 : 연 (%)
- 2년 이상 : 연 (%)

② 5년 경과후 : 약정이율

➤ [2012년 2월27일 이후 상품 가입 고객]

계약기간 만기전에 중도해지시 입금건별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계산은 아래와 같다.

- (입금후) 1개월미만: 연 (%) / 2개월미만: 연 (%) / 3개월미만: 연 (%)
- 3개월이상부터는 아래 산식에 의거하여 이율 계산

\* 중도해지이율=약정이율 X (1-차감율)

※ 계산된 중도해지 이율과 기존 등록된 중도해지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함.

\*\* 차감율=K X (해지일부부터만기일까지 잔존월수)/(입금일부부터만기일까지월수),  
(K=1.2이며 변경 가능함, 월수이하의 일수는 올림 처리)

예시) 2011년 9월 10일 신규(12개월 만기)

- 2012년 8월 16일 중도해지 신청시: 차감율=25일/12개월 --> 1개월/12개월

- 2012년 6월 15일 중도해지 신청시: 차감율=2개월26일/12개월 --> 3개월/12개월

• 중도해지이자 = 건별원금 X 중도해지이율 X (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경과일수)/365

◆ 이율변동(거치기간 3년경과후)인 경우 약정이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.

\* 약정이율 = ((이율1\*3년)+(이율2\*잔여만기))/(3년+잔여만기)

◆ 상기 이율은 연이율 및 세전기준임

## 제9조 만기후 자동이체 서비스

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전까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체지정을 하면 만기시 자동 이체 가능

※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